

2021년 11월 8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만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2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계획 조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 허용 (안 제25조)
-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 (안 제25조의3)
- 자연녹지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시 건폐율 완화 (안 제67조)
- 실효성 없는 용적을 완화규정 정비 (안 제72조)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을 완화 (안 제75조의3)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 (안 제77조,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적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안 별표 7 ~ 별표 10)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4422, FAX 062-613-4419, E-mail : taeseong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등.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으로,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50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를 “(법 제5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사기”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대규모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전문개정>
- ②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 ③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은 제25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 영 제46조의2제2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기타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조례에 따른다.

제28조의3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각각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 이내로 한다.

-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72조제1항제16호 및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각각 “성장관리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6절에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7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72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72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횟수에 포함된다”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6.10.1., 2019.3.15., 2019.10.15., 2020.6.1., 202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4호 관련)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반계임대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삭제<2010.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무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사무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조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한다)

【별표 5】 <개정 2015.1.1., 2016.10.1., 2019.3.15., 2019.10.15., 2020.6.1., 2021.0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5호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가. 공연장
 - 나. 집회장
 - 다. 전시장
 - 라. 동·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반계임대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삭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

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무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사무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소년원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14.6.30, 2016.10.1, 2018.1.1., 2019.3.15., 2019.10.15., 2020.6.1., 2021.2.25., 2021.00.00>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6호 관련)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

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초·중·고등학교(대학 내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대지
 - 나. 초·중·고등학교(대학 내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대지에 장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개정 2014.6.30, 2015.12.28., 2019.3.15., 2020.6.1., 2021.2.25., 2021.00.0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7호 관련)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24의 비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 시설로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고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8】 <개정 2014.6.30, 2015.12.28, 2016.10.1., 2019.3.15., 2020.6.1., 2021.2.25., 2021.00.0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8호 관련)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의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24의 비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 시설로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고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개정 2014.6.30, 2015.12.28, 2016.10.1., 2019.3.15., 2019.10.15., 2020.6.1., 2021.2.25., 2021.00.0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9호 관련)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의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24의 비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 시설로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한 근린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위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고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사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4.6.30., 2015.12.28., 2020.6.1., 2021.2.25., 2021.00.0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10호 관련)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 시설로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것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한 유통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위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고 10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2】 <개정 2015.1.1., 2018.1.1., 2020.6.1., 2021.00.00.>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2호 관련)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과 마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다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 <개정 2014.6.30., 2020.6.1., 2021.2.25., 2021.00.00.>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13호 관련)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개정 2015.1.1., 2017.2.23., 2018.1.1., 2020.6.1., 2021.00.0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4호관련)

①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②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

에 설치하는 봉안당(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개정 2015.1.1., 2017.2.23., 2018.1.1., 2020.6.1., 2021.2.25., 2021.00.0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7호관련)

① 영 별표 1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② 보전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사계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 <개정 2014.6.30., 2015.1.1., 2015.12.28., 2016.10.1., 2018.1.1., 2019.3.15., 2019.10.15., 2020.6.1., 2021.00.0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8호 관련)

① 영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②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학교(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운전학원·정비학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9】 <개정 2014.6.30., 2015.1.1., 2020.6.1., 2021.2.25., 2021.00.0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러목의 안마시설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별표 20】 <개정 2016.10.1., 2018.1.1., 2019.10.15., 2020.6.1., 2021.00.0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0호 관련)

농림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다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7. 삭제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1】 <개정 2020.6.1., 2021.00.0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1호 관련)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u>별 제28조제4항</u>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일간하는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 <u>별 제28조제5항</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u>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14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u>별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등) ① (생략)	제2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신 설>	③ <u>영 제50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u>
제2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제2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등(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u>(별 제52조의2제1항</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u>감정평가사가</u> 평가한 <u>감정평가액의 평균가</u> 를 원칙으로 한다.	2. ----- <u>감정평가법인등</u> 의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대규모시설 이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영 제42조	제25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u>별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u>

의3제2항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보호·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은 제25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 9. (생략)

<신 설>

제34조의2(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③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은 제25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 영 제46조의2제2항 및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기타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조례에 따른다.

제28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역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1. (현행과 같음)
2. -----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생략)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2. (생략)

② ~ ⑩ (생략)

<신 설>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9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2.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1. ~ 15. (현행과 같음)
16. ----- 성장관리계획-----
17. (현행과 같음)
18. ----- 성장관리계획-----
19. ----- 성장관리계획-----
20. ~ 22.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 이내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할 것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1. ~ 15. (현행과 같음)
16. ----- 성장관리계획-----
17. 18. (현행과 같음)
19. ----- 성장관리계획-----
20.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75조3(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7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72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72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제77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및 건설 관련국장으로 한다.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위촉횟수는 3회, 연임은 1회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 ----- ----- 하며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횟수에 포함된다.	⑤ ----- ----- ----- 하며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횟수에 포함된다.

4	수영장	8,981.0	-	8,981.0	1.9	
5	종합운동장	78,837.0	-	78,837.0	16.2	
6	테니스코트	9,000.0	-	9,000.0	1.9	
7	도로	69,958.0	-	69,958.0	14.4	
8	주차장	91,858.3	증98.7	91,957	18.9	

연번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5,978.3	증98.7	486,077.0	100.0	
9	녹지	66,733.0	-	66,733.0	13.7	
10	광장	5,915.0	-	5,915.0	1.2	
11	골프연습장	42,207.0	-	42,207.0	8.7	
12	올림픽생활관	3,600.0	-	3,600.0	0.7	
13	실내빙상장	9,145.0	-	9,145.0	1.9	
14	점도장	1,576.0	-	1,576.0	0.3	
15	씨름장	611.0	-	611.0	0.1	
16	보조경기장	21,887.0	-	21,887.0	4.5	
17	다목적체육관	10,140.0	-	10,140.0	2.1	
18	역도장	398.0	-	398.0	0.1	
19	종합체육관	2,043.0	-	2,043.0	0.4	
20	장애인체육센터	1,604.0	-	1,604.0	0.3	

□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참조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65호

도시관리계획(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동구 푸른도시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10. 5.

광주광역시 시장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6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염주종합운동장)의 시설면적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0. 1.

광주광역시 시장

■ 시설 변경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9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서구 풍암동 423-2 일원	485,978.3	증98.7	486,077.0	

■ 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9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 부지면적 485,978.3㎡ → 486,077.0㎡	· 토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	

■ 세부시설 변경결정 조서

연번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5,978.3	증98.7	486,077.0	100.0	
1	실내체육관	16,000.0	-	16,000.0	3.3	
2	축구장	19,401.0	-	19,401.0	4.0	
3	승마장	26,084.0	-	26,084.0	5.4	

II. 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개요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공원 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4	근린공원	금남로공원	동구 금남로3가 20-2일원	3,489.8	증296.9	3,786.7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최초) : 2003. 11. 15(광주광역시 고시 제157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 2004. 08. 21(광주광역시 고시 제89호)
- 공원조성계획 변경(최종) : 2021. 01. 28(광주광역시 고시 제35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 신청내용 :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
- 변경사유
 -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내 미디어아트 시설물 설치
 - 도시관리계획과 일치기를 위한 면적정정(면입토지 및 미반영 시설 등)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물(법정 40%이하)	35.88%	37.03%	증1.15%
설치제한면적(법정 20%이내)	-	-	-
건폐율(법정 10%이하)	0.32%	0.29%	감0.03%

II. 금남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계	3,489.8	1	11.30	11.30	31	3,786.7	1	11.30	11.30	44	증 296.9㎡
시설소계	1,252.4					1,402.4					증 150㎡
기반시설	884.0					1,154.0					증 270㎡
도로	340.0					415.0					
광장	544.0					739.0					
조경시설	202.0				4	212.0				13	증 10㎡
휴양시설	95.0				25	0				20	감 95㎡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45.9				2	10.9				2	감 35㎡
편의시설	25.5					25.5					
공원관리시설										9	
녹지 및 기타	2,237.4					2,384.3					증 146.9㎡
시설률 (법정 40%)	$(1,252.4 / 3,489.8) \times 100 = 35.88\%$ (공원면적의 40%이하)				$(1,402.4 / 3,786.7) \times 100 = 37.03\%$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 4]		
설치 제한 면적 (법정 20%)	-				-				(시행규칙 11조 5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부지면적 합		
건폐율 (법정 20%)	$(11.03 / 3,489.8) \times 100 = 0.32\%$ (공원면적의 10% 이내)				$(11.03 / 3,786.7) \times 100 = 0.29\%$ (공원면적의 10% 이내)				(조례 67조 5항) [별표 16의 2]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계	3,489.8	1	11.30	11.30	31	3,786.7			44			
시설소계	1,252.4				31	1,402.4			44	증 150㎡		
기반시설	도로	전지역	340.0			도로	전지역	415.0				
	광장	전지역	544.0			1	광장	전지역	739.0			
	1-1	상징광장	금남로3가 20-2	111.0		1-1	상징광장	금남로3가 20-2	111.0			
	1-2	선큰광장	금남로3가 20-2	273.0		1-2	선큰광장	금남로3가 20-2	433.0			
	1-3	소광장-1	금남로3가 20-2	80.0		1-3	소광장-1	금남로3가 20-2	80.0			
	1-4	소광장-2	금남로3가 20-2	80.0		1-4	소광장-2	금남로3가 20-2	80.0			
						1-5	소광장-3	금남로3가 20-2	65.0	추가		
조경시설	소계		202.0			4	소계	212.0			13	증 10㎡
	2	벽천	소광장-1-2 내	173.0		2	벽천	소광장-1-2 내	173.0			
	3	상징조형물	상징광장 내	29.0		3	상징조형물	상징광장 내	29.0			
	①	앞음벽	부지 내			4	① 앞음벽	부지 내			4	
						②	빌프로젝터	부지 내			9	신설
						4	나비상자	부지 내	10.0			신설
휴양시설	소계		95.0			25	소계	0			20	감 95㎡
		휴게데크	95.0					휴게데크	95.0			삭제
	4-1	휴게데크-1	66.0				4-1	휴게데크	66.0			삭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교양시설	4-2	휴게데크-2		290					5-2	휴게데크-2		290					삭제		
	4-3	휴게데크-3							5	휴게데크-3							부호변경		
	②	아이타워	휴게데크 내						5	아이타워	휴게데크 내						5	삭제	
편의시설	③	벤치	전지역						20	③ 벤치	전지역						20	27종 LED채널로 변경	
	소계			459				2	소계			10.9				2	감 35㎡		
	5	아이무대		45.0					6	아이무대		10.0						부호변경	
	6	419학평표지석		0.6					1	7	419학평표지석		0.6					1	부호변경
편의시설	7	315의거표지석		0.3					1	8	315의거표지석		0.3					1	부호변경
	소계			25.5					소계			25.5						-	
편의시설	8	화장실		25.5	1	11.3	11.3		9	화장실		25.5	1	11.3	11.3			부호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관리시설	소계								소계								9	-
	④	안내판							④	안내판								
녹지 및 기타	소계			2,237.4					소계			2,384.3						감 146.9㎡
	녹지	전지역	2,237.4						녹지	전지역	2,384.3							

3.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m)	원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340.0					증 75㎡
						415.0					
당초	소로	소계			35.0	156.0					
					35.0	156.0					
당초			1	6.0	17.0	102.0	시설연결로	선큰광장	소광장-1		
당초			2	3.0	7.0	21.0	시설연결로	선큰광장	소광장-2		
당초			3	3.0	11.0	33.0	시설연결로	소광장-2	소로3-4		
당초	산책로	소계				92.0	184.0				증 75㎡
변경					129.5	259.0					
당초	변경	산책로	1	2.0	92.0	184.0	금남로3가 20-2	금남로3가 20-2	증장로3가 1-1		
1			2.0	129.5	259.0	금남로3가 20-2	금남로3가 20-2	증장로3가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13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124호(2021.09.15.)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20-1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불입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0. 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변경 사유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소촌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20번지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20-10번지 일원	29,460.7	감) 198	29,262.7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20-10번지 일원	29,2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분할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중로2-140호선의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보행자전용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460.7	감) 198	29,262.7	100.0	
주 거 지 역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6,721.7	감) 86	26,635.7	91.0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739	감) 112	2,627	9.0	
	합	29,460.7	감) 198	29,262.7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소촌동 420-10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21.7	감) 86	26,635.7	60%이하	중로2-140호선의 지적분할 및 소로 변경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	소촌동 420-8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739	감) 112	2,627	50%이하	중로2-140호선의 지적분할 및 소로 변경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가능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위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기정	중로	2	140	15-17.5	257 (236)	대2-20 소촌동 411-2도	소촌동 783-81구	일반 도로	-	광고 97, 92. 8. 6.	
변경	중로	2	140	15-17.5	257 (236)	대2-20 소촌동 411-9도	소촌동 783-81구	일반 도로	-	광고 97, 92. 8. 6.	
기정	소로	3	204	6	144 (50)	소로2-353 소촌동 462-2구	소로3-206 소촌동 437-4입	일반 도로	-	국고 254, 14. 5. 23	
변경	소로	3	204	6	144	소로2-353 소촌동 462-2구	소로3-206 소촌동 437-4입	일반 도로	-	국고 254, 14. 5. 23	구역계 제척
기정	소로	3	525	4	53	소 3-204 소촌동 437입	소촌동 439-4대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산구 167, 19. 11. 5	
변경	소로	3	525	3	56 (56)	소촌동 439-5대	소로3-204 소촌동 438전	보행자 전용 도로	-	광산구 167, 19. 11. 5	선형 변경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입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40	중로 2-140	• 시점 변경 - 소촌동 411-2도 → 소촌동 411-9도	• 지적분할에 따른 시점 변경
소로 3-204	소로 3-204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
소로 3-525	소로 3-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종점 및 폭원, 연장 변경 시점 : 소3-204, 소촌동 437입 → 소촌동 439-5대 종점 : 소촌동 439-4대 → 소로3-204, 소촌동 438전 폭원 : 4m → 3m 연장 : 53m → 56m 	•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선형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A-1	A-1	25,205.7	광주광역시 소촌동 420번지 일원	25,205.7	
변경	A-1	A-1	25,205.7	광주광역시 소촌동 420-10번지 일원	25,205.7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1	A-1	대표지번 변경	• 지적분할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A-1	광주광역시 소촌동 420번지 일원	광주광역시 소촌동 420-10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형태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색 채	높 이	높 이	• 14층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지붕 권장(통일성 유지) 외벽 : 의장, 재료, 색채가 통일성을 유지하며 주변 건물과의 조화 유도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및 투시형 담장 계획 각 동별 주동길이 70m이하, 입면적 3,500㎡이하 		
대지 내 통로	색 채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가급적 원색 지양		
		부차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도와 명도를 낮추어 사용)		
			대지 내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북측 외곽부에 폭 2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일반 대중의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1	A-1	대표지번 변경	• 지적분할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행도면 : 계획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756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 중로1-4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공고

광주 북구 북구 문흥동 876-89번지 일원 문흥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1. 10. 7.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문흥동 876-89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 중로1-48호선)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 중로1-48호선) 개설공사

3. 사업규모

노선명	총 규모	금 회 시 행	비고
대로1-2	L=6,096m, B=35~42m	L=116m, B=3.0m, A=319㎡	전고 65 ' 84.4.24.
중로1-48	L=867m, B=20~23m	L=156m, B=3.0m, A=431㎡	전고 62 ' 86.5.2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나. 성 명 : (주)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5. 사업시행기간

가. 착수에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7.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 붙임

7. 열람기간 : 2021. 10. 7. ~ 10. 22.(15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2)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 제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북구 각화동	437-2	도	47	47	국(건설교통부)	-	-	-	-	대로1-2
2	북구 각화동	447-12	잡	16	1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3	북구 각화동	447-4	도	71	71	광주광역시	-	-	-	-	〃
4	북구 각화동	447-14	차	83	8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5	북구 각화동	447-9	도	4	4	국(건설교통부)	-	-	-	-	〃
6	북구 각화동	448-8	대	31	3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7	북구 각화동	570-76	구	27	27	국(건설부)	-	-	-	-	〃
8	북구 각화동	581-10	도	40	40	국(건설교통부)	-	-	-	-	〃
9	북구 각화동	448-7	대	16	1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중로1-48
10	북구 각화동	570-7	구	12	12	국(건설부)	-	-	-	-	〃
11	북구 각화동	577-84	잡	19	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12	북구 각화동	581-8	도	4	4	국(건설부)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북구 문흥동	838-18	도	9	9	국(건설부)	-	-	-	-	중로1-48
14	북구 문흥동	876-89	답	62	62	국(재정경제원)	-	-	-	-	〃

15	북구 문흥동	876-90	대	14	1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16	북구 문흥동	876-91	대	8	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17	북구 문흥동	876-97	차	24	2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18	북구 문흥동	876-98	대	48	4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19	북구 문흥동	876-99	대	36	3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20	북구 문흥동	876-21	도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김세* 조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	-	-	〃
21	북구 문흥동	876-103	대	30	30	김차*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	-	-	〃
22	북구 문흥동	876-106	답	5	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북구 문흥동	876-107	답	45	4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중로1-48
24	북구 문흥동	876-40	답	5	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25	북구 문흥동	876-41	답	1	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26	북구 문흥동	876-108	대	8	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27	북구 문흥동	876-109	대	18	1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28	북구 문흥동	876-110	대	8	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29	북구 문흥동	876-48	답	15	1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30	북구 문흥동	876-50	답	4	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31	북구 문흥동	876-117	도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32	북구 문흥동	876-119	도	20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7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광주 남구 주월동 957-21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1. 10. 7.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57-21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호선)

나. 명 칭 : 남구 주월동 주상복합(주월 대라수) 신축공사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사업

3. 사업규모

노선명	총 규모	금 회 시 행	비고
대로 1-5	L=7,709m, B=35-38m	L=43.0m, B=3.0m, A=125.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0 (화정동)

나. 성 명 : 주은주택건설(주) 대표 이형재

5. 사업시행기간

- 가. 착수에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2022. 1.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남구 주월동	957-21	대	353.1	37.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남구 주월동	957-22	대	551.5	34.0					
3	남구 주월동	957-10	대	310.4	54.1					
합 계				1215.0	125.6					

7. 열람기간 : 2021. 10. 7. ~ 10. 21.(14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1)

※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 제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769호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미래문화산업 감속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7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10. 8.

광주광역시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29-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7호선)사업
- 2) 명 칭 : 미래문화산업 신축에 따른 감속차로 개설(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시설명	세부시설	총 규모(m)	금회 시행	
도로	대로2-7	L=7,200m, B=30~33m	L=60.0m, B=3.0m, A=474.0㎡	건고 488 ('85. 11. 12.)

라. 사업시행자

- 1)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 8(생용동)
- 2) 성 명 : 미래문화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영관

마. 사업시행기간 : 2021. 9. 7. ~ 2021. 12. 31.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77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대로2-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재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640(2021. 9. 8.)호로 공고한 동구청~조대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대로2-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내용 중 토지조서 착오 기재에 대해 정정하여 재공고합니다.

2021. 10. 7.

광주광역시

- 1. 사업시행지 위치 : 동구 서석동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대로2-37호선) 사업
 - 사업의 명칭 : 동구청~조대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 도로

노 선 명	총 규모	금회시행	비고 (면적)
대로2-37호선	L=1,395m, B=30m	L=375m, B=30m	11,236.2㎡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당초)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변경)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화정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0. 8. 1.
 - 준공예정일 : (당초)2021. 12. 31. → (변경)2023.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정정)
 - 토지조서 불입(정정),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7. 열람기간 : 2021. 10. 7. ~ 2021. 10. 21.(15일간)
-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062-613-6895)
 -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에 서면(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정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대로 2-27호선											
1	동구 서석동	48-5	도	1,458.6	174	공	광주광역시				
2	동구 서석동	34-1	대	9.9	9.9	국	기획재정부				
3	동구 서석동	31-10	도	956.9	181	공	광주광역시				
4	동구 서석동	33-1	도	1,186.8	1,027	국	국토교통부				
5	동구 서석동	31-12	대	1,095.7	1,095.7	공	광주광역시				
6	동구 서석동	32-1	도	36.4	36.4	국	국토교통부				
7	동구 서석동	31-1	도	915.7	873	공	광주광역시				
8 (당초)	동구 서석동	30-3	대	99.2	79.3	신**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 9	서석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188(서석동)	근저당	
8 (정정)	동구 서석동	30-25	대	79.3	79.3	신**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 9	서석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188(서석동)	근저당	지번 지적 정정
9	동구 서석동	30-23	대	101.8	101.8	공	광주광역시				
10	동구 서석동	30-24	대	131.8	131.8	이**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197번길3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50(광주지점)	근저당	
11	동구 서석동	28-22	대	174.1	174.1	공	광주광역시				
12	동구 서석동	28-10	대	105.3	105.3	공	광주광역시				
13	동구 서석동	27-6	대	79	79	공	광주광역시				
14	동구 서석동	27-3	도	803.9	799	공	광주광역시				

15(당초)	동구 서석동	27-5	대	522.6	244.3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남문로 693번길 11, 207동901호(학2마을아파트)											
15(정정)	동구 서석동	27-32	대	244.3	244.3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남문로 693번길 11, 207동901호(학2마을아파트)											지번 지적 정정
16	동구 서석동	25-26	대	242.4	242.4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6-1											
17	동구 서석동	25-16	대	16.5	16.5	박**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6-1											
18(당초)	동구 서석동	26-23	대	135.1	1.2	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3-2	대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254(동명동)									근저당
18(정정)	동구 서석동	26-30	대	1.2	1.2	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3-2	대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254(동명동)									지번 지적 정정
19	동구 서석동	25-17	대	99.2	99.2	임**	충남 공주시 우금터로 580, 109동 501호(달학동, 금학 e-편한세상 아파트)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서석동)									근저당
20(당초)	동구 서석동	26-15	대	198.3	100.1	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9번길 12, 206호(서석동)											지번 지적 정정
20(정정)	동구 서석동	26-29	대	100.1	100.1	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9번길 12, 206호(서석동)											지번 지적 정정
21	동구 서석동	23	대	16.5	16.5	양**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0-4(서석동)											
22(당초)	동구 서석동	26	대	195.0	2.4	백**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7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서석동)									근저당
22(정정)	동구 서석동	26-28	대	2.4	2.4	백**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7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서석동)									지번 지적 정정
23(당초)	동구 서석동	20-6	도	1,342.1	32.4	국	국토교통부											지번 지적 정정
23(정정)	동구 서석동	20-27	도	32.4	32.4	국	국토교통부											지번 지적 정정
24	동구 서석동	23-13	대	59.5	59.5	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6											
25(당초)	동구 서석동	22-4	대	541.7	16.4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	세마을고										
25(정정)	동구 서석동	22-6	대	16.4	16.4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	세마을고										지번 지적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정정)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대로 2-37호선												
26(당초)	동구 서석동	23-34	대	89.8	89.8	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7					
27(당초)	동구 서석동	23-26	대	125.6	7.8	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7					
27(정정)	동구 서석동	23-29	대	7.8	7.8	김**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7					지번 지적 정정
28	동구 서석동	23-35	대	114.7	114.7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7					지번 지적 정정
29(당초)	동구 서석동	1005-2	도	88	68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7					
29(정정)	동구 서석동	1005-41	도	74	68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27					지번 지적 정정
30(당초)	동구 서석동	468	대	249	92	신**	전남나주시노안면용암길126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서석동)			근저당
30(정정)	동구 서석동	468-37	대	92	92	신**	전남나주시노안면용암길126	서석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88(서석동)			지번 지적 정정
31(당초)	동구 서석동	468-16	대	178	166	이**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31-1					
31(정정)	동구 서석동	468-38	대	166	166	이**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31-1					지번 지적 정정
32(당초)	동구 서석동	435-12	대	258	68	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83, 103동 1603호(풍암동, 풍암우미아파트)					
32(정정)	동구 서석동	435-33	대	68	68	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83, 103동 1603호(풍암동, 풍암우미아파트)					지번 지적 정정

33(당초)	동구 서석동	435-8	대	218	85	장**	광주광역시 동구 노대신로 26, 102동 1204호(노대신, 진원지구 남양휴튼)											
33(정정)	동구 서석동	435-31	대	85	85	장**	광주광역시 동구 노대신로 26, 102동 1204호(노대신, 진원지구 남양휴튼)											지번 지적 정정
34(당초)	동구 서석동	435-9	대	126	96	나**	광주광역시 동구 노대신로 277, 한신2차아파트203동1309											지번 지적 정정
34(정정)	동구 서석동	435-32	대	96	96	나**	광주광역시 동구 노대신로 277, 한신2차아파트203동1309											지번 지적 정정
35(당초)	동구 서석동	436-10	대	176	4	이*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35(정정)	동구 서석동	436-15	대	4	4	이*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지번 지적 정정	
36	동구 서석동	435-3	도	199	199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37	동구 서석동	427-2	공	975	89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38	동구 서석동	139	도	321	1	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465개포4차우성아파트5-707											
39(당초)	동구 서석동	1001-15	도	380.2	57	국	국토교통부											
39(정정)	동구 서석동	1001-25	도	58.6	57	국	국토교통부											지번 지적 정정
40	동구 서석동	30-4	도	710.7	703	국	국토교통부											
41	동구 서석동	29-4	도	264.5	208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42	동구 서석동	29-3	도	320.7	160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43	동구 서석동	25-12	도	579.8	560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44(당초)	동구 서석동	23-1	도	2,333.8	1,509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44(정정)	동구 서석동	23-36	도	2,324.8	1,509	공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85번길10											지번 지적 정정
45(당초)	동구 서석동	23-24	대	33.1	31.1	김**	광주광역시 동구 제석로80번안길 11, 103동1703호(분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225(대인동)				근저당	
45(정정)	동구 서석동	23-38	대	31.1	31.1	김**	광주광역시 동구 제석로80번안길 11, 103동1703호(분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225(대인동)				지번 지적 정정	
46(당초)	동구 서석동	23-3	대	136.6	6.6	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31-1											
46(정정)	동구 서석동	23-37	대	6.6	6.6	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31-1											지번 지적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서(정정)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대로 2-37호선												
47	동구 서석동	468-1	도	694	644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468-1					
48	동구 서석동	435-5	도	400	400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435-5					
49	동구 서석동	466-18	도	197	11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466-18					
50	동구 서석동	1005-17	도	111	51	국	국토교통부					
51	동구 서석동	1008	구	228	70	국	국토교통부					
52	동구 서석동	466-2	공	2,438	47	공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466-2					